

# 「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」 일부개정안

## 1. 개정이유

공항 주변 장애물 관리에 대한 공항시설법령이 개정(시행 2023. 10. 19.)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 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(안 제1조)

나. 부령 내용 반영(안 제15조)

다. 자구 수정, 문구 정리 등 미비점 보완(안 제3조, 제4조, 제18조 등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항시설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8호”를 “제3항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국제민간항공협약”을 “국제민간항공조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.

제4조제2호나목 중 “CAT-I 정밀접근활주로”를 “CAT-I 정밀접근활주로”로, “CAT-I 정밀접근을”을 “CAT-I 정밀접근을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CAT-II 정밀접근활주로”를 “CAT-II 정밀접근활주로”로, “CAT-II 정밀접근을”을 “CAT-II 정밀접근을”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중 “CAT-III 정밀접근활주로”를 “CAT-III 정밀접근활주로”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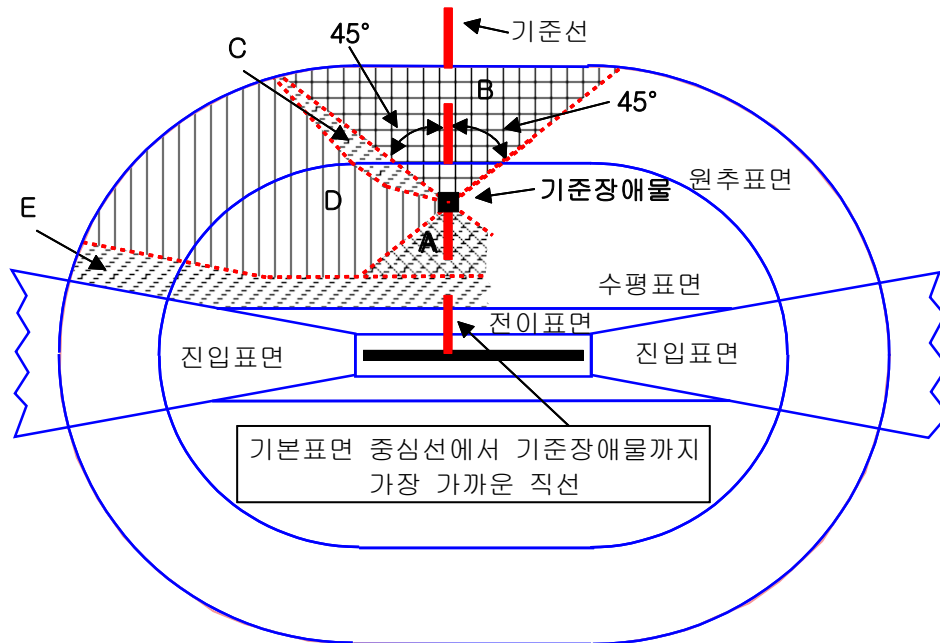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2조 제1항제6호 및 별표 6에 따른”을 “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애물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진입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호의2에 따른 준치장애물 중 수목을 제외한 준치장애물(이하 “기준장애물”이라 한다) 정상의 높이와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차폐를 허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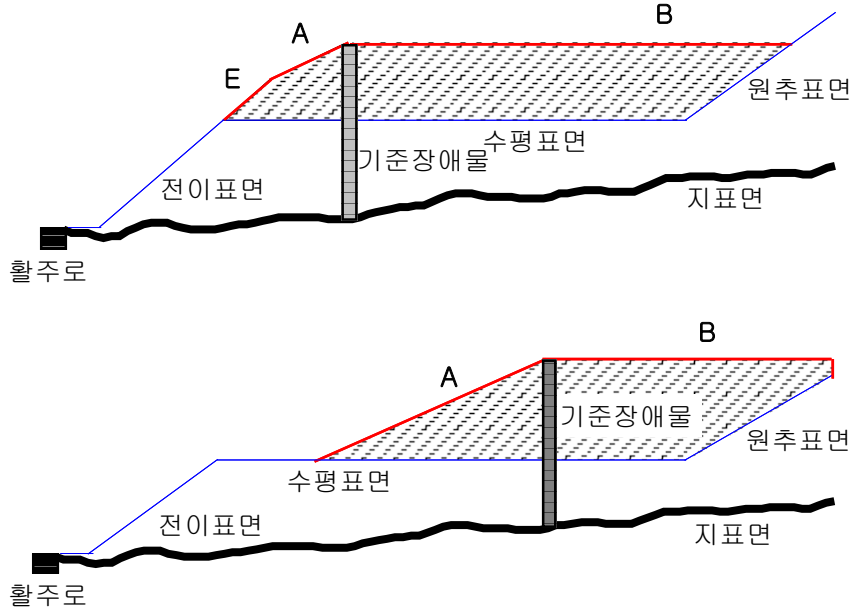
제15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차폐 적용은 기준장애물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기본표면 긴 변의 중심선을 향한 선(이하 “기준선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 제15조제3호다목(1)부터 (4)까지 외의 부분 중 “각호를”을 “요건을”로 하고, 같은 목 (4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4)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부분(그림 3-1 “E”)은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측경계선에서 상방경사도 7분의 1의 경사면(그림 3-1 “E”)의 아래 부분으로 한다.(표3-1 참조)



<그림 3-1>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적용 평면도



<그림 3-2>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적용 측면도

<표 3-1>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차폐

구분	명칭	경 사 도
A	전면	-장애물 기준 하방 10분의 1의 경사면
B	후면	-장애물의 높이와 같은 평면
C	경사면	-장애물이나 후면 외곽선에서 하방 10분의 1의 경사면
D	측면	-장애물 기준 하방 10분의 1의 경사면
E	전이표면	-기존의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측에서 상방 7분의 1의 경사면

제18조 제2항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중 “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장비 및 설치물”을 “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후단 중 “공항장비”를 “공항 장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공항장비들”을 “공항 장비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“공항장비”를 “공항 장비”로, “6.3”을 “제25조”로 한다.

제25조의 제목 “(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장비와 설치물의 종류)”를 “(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의 종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

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항장비”를 각각 “공항 장비”로 한다.

제26조 중 “2025년 6월 31일”을 “2025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 제8호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.</p> <p>제3조(준용 규정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국제민간항공협약</u> 부속서 14 (공항)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제4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계기활주로(Instrument runway)”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제3항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준용 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국제민간항공조약</u>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 <p>제4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

나. CAT-I 정밀접근활주로  
(Precision approach runway, Category I) : 결심고도 60m 이상이고, 시정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m 이상 조건으로 운용되며, CAT-I 정밀접근을 지원하는 지상항행안전무선시설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

다. CAT-II 정밀접근활주로  
(Precision approach runway, Category II) : 결심고도 30m 이상 60m 미만이고,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의 조건으로 운용되며 CAT-II 정밀접근을 지원하는 지상항행안전무선시설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

라. CAT-III 정밀접근활주로  
(Precision approach runway, Category III) : 결심고도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그시범위 3

나. CAT-I 정밀접근활주로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CAT-I  
정밀접근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다. CAT-II 정밀접근활주로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CAT-II 정밀접근을  
-----  
-----  
-----

라. CAT-III 정밀접근활주로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00m 미만 또는 활주로가  
시범위 한계가 없이 운용  
가능한 계기활주로

3. ~ 22. (생략)

제15조(차폐) 규칙 제22조 제1항  
제6호 및 별표 6에 따른 차폐기  
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진입표면은 차폐를 적용하지  
아니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

3. ~ 22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차폐) --- 제22조제1항제  
6호에 따른 장애물의 -----  
-----.

1. 진입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 
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 
족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 
대하여 법 제4조제3호의2에  
따른 존치장애물 중 수목을  
제외한 존치장애물(이하 “기  
준장애물”이라 한다) 정상의  
높이와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 
차폐를 허용한다.

가.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  
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 
활주로 시단에서 60 미터  
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  
으로부터 3천 미터 밖의  
진입표면에 위치한 경우

나. 진입표면의 후면(기준장  
애물의 정상에서 활주로를  
향한 반대방향으로의 중심  
선 좌측 및 우측으로 45도



2. (생략)

3.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가. 차폐 적용은 장애물(이하 “기준장애물“이라 한다)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기본표면 긴 변의 중심선을 향한 선(이하 “기준선“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(생략)

다. 차폐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

(1) ~ (3) (생략)

(4)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부분 (그림 3-1 “E“)은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측경계선에

선을 그어 장애물 정상의 높이와 같거나 낮은 면을 말한다)에 위치한 경우

다. 기준장애물의 후면 방향으로 수평거리 152 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.

가. 차폐 적용은 기준장애물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기본표면 긴 변의 중심선을 향한 선(이하 “기준선“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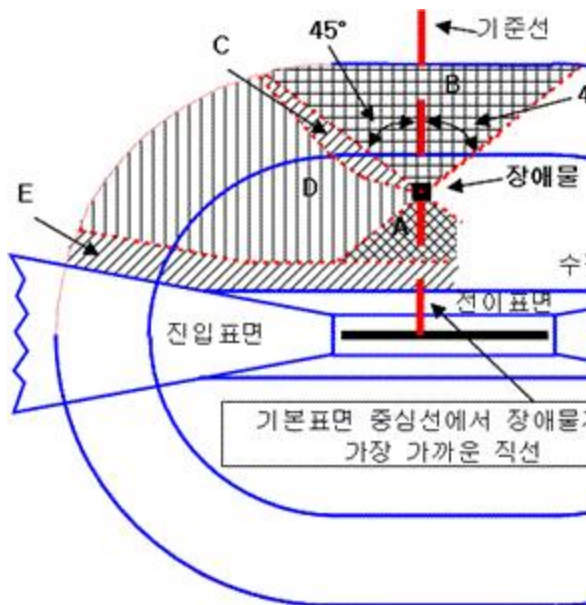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  
----- 요건을 -----  
-----.

(1) ~ (3) (현행과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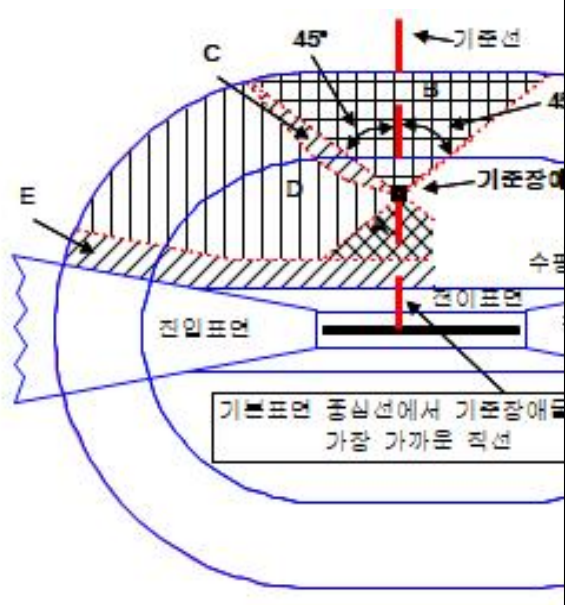
(4)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부분 (그림 3-1 “E“)은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측경계선에

서 상방경사도 7분의 1의 경사면(그림 3-1 “E”)의 아래 부분으로 한다.(표3-1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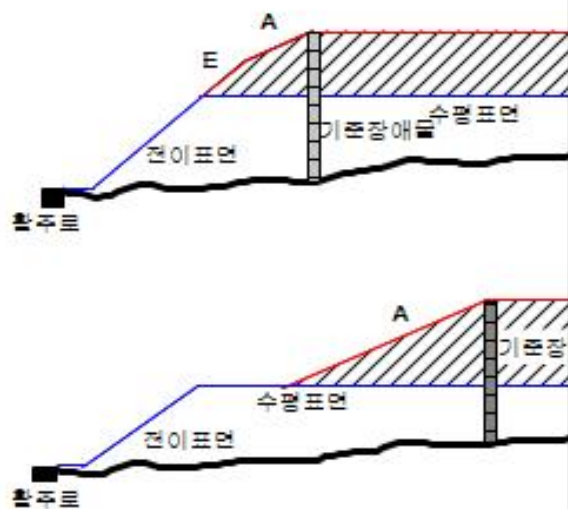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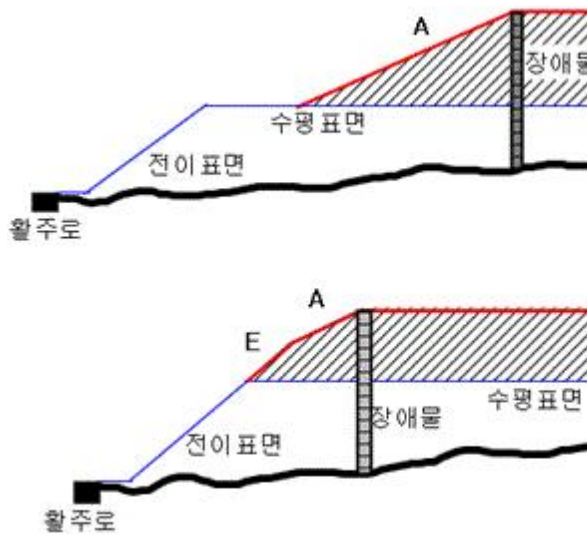


<그림 3-1>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

서 상방경사도 7분의 1의 경사면(그림 3-1 “E”)의 아래 부분으로 한다.(표3-1 참조)



<그림 3-1>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



<그림 3-2>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

<그림 3-2>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

<표 3-1>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

<표 3-1>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

구분	명칭	경계
A	전면	-장애물 기준 허방 10분의 1의 경계
B	후면	-장애물의 높이와 같은 평면
C	경사면	-장애물이나 후면 외곽선에서 허방 10분의 1의 경계
D	측면	-장애물 기준 허방 10분의 1의 경계
E	전이표면	-기존의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곽선

구분	명칭	경계
A	전면	-장애물 기준 허방 10분의 1의 경계
B	후면	-장애물의 높이와 같은 평면
C	경사면	-장애물이나 후면 외곽선에서 허방 10분의 1의 경계
D	측면	-장애물 기준 허방 10분의 1의 경계
E	전이표면	-기존의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곽선

4. 5. (생략)

제18조(비계기/비정밀 접근활주로의 제한) ① (생략)

② I 구간의 제한

1. (생략)

3. (생략)

3. 4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6장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장비 및 설치물

4. 5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비계기/비정밀 접근활주로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장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





와 설치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.

1. ~ 20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26조(유효기간) 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)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6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---

1. ~ 20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유효기간)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 2025년 6월 30일-----

-----.